

1. 高壓가스 關聯法規 改正

'83年 12月 31日자로 高壓가스 關聯法規가 大幅 改正되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나라에 導入된 LNG 및 LPG가 燃料로서 우리의 生活圈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클 것에 對備, 制度的 根據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번 改正方向에서 注目되는 것은 既存 '高壓가스 安全管理法' 및 '가스 事業法'에 包含되어 있던 LPG에 관한 事項을 削除하여 別途의 法律, 即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으로 規定했고, 또 現行 '가스 事業法'을 '都市가스 事業法'으로 變更하여 將次 使用될 LNG 및 需給이 늘고 있는 都市가스에 관한 諸般 必要事項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本號에서는 이번 改正·制定된 세 가지 高壓가스 關聯法規의 全文을 掲載, 點檢業務에 參考토록 하고자 한다.

高壓가스 安全管理法

第 1條(目 的) 이 법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運搬·사용과 高壓가스의 容器·冷凍機·特定設備등의 製造 및 檢査등에 관한 事項을 정함으로써 高壓가스로 인한 危害를 防止하고 公共의 安全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條(適用範圍) 이 법의 適用을 받는 高壓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條(定 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貯藏所"라 함은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一定量이상의 高壓가스를 容器 또는 貯藏탱크에 의하여 貯藏하는 一정한 場所를 말한다.
2. "容器"라 함은 高壓가스를 充填하기 위한 것(附屬品을 포함한다)으로서 移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貯藏탱크"라 함은 高壓가스를 貯藏하기 위한 것으로서 一정한 位置에 固定設置된 것을 말한다.
4. "冷凍機"라 함은 高壓가스를 사용하여 冷凍을 하기 위한 機器로서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冷凍能力이상인 것을 말한다.

5. "特定設備"라 함은 貯藏탱크 및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高壓가스設備을 말한다.

第 4條(高壓가스의 製造許可등) ① 高壓가스를 製造(容器에 充填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 가스製造者"라 한다)는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제외한다)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貯藏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 가스貯藏者"라 한다) 또는 高壓가스를 販賣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가스販賣者"라 한다)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서울特別市와 直轄市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제외한다)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第 1項 및 第 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種類·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및 販賣에 關

요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④許可官廳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 때에는 7日 이내에 그 許可事項을 管轄 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5條(容器·冷凍機 및 特定設備의 製造許可등) ①容器·冷凍機 또는 特定設備(이하 “容器등”이라 한다)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の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제외한다)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容器등의 製造에 필요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③容器등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容器등을 修理하고자 할 때에는 그 容器등을 修理할 수 있는 資格을 가진 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容器등의 修理基準과 容器등을 修理할 수 있는 者의 資格 및 修理範圍는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6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을 수 없다. 다만, 高壓가스製造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高壓가스貯藏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이상의 刑을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違反하여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

당하는 法人

第7條(事業開始등의 申告)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등”이라 한다)가 그 事業 또는 貯藏所의 사용을 開始하거나 事業 또는 貯藏所의 사용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休止한 事業 또는 貯藏所의 사용을 再開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8條(承繼) ①事業者등이 그 事業 또는 貯藏所를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와 法人인 事業者등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事業 또는 貯藏所의 讓受者·相續人 또는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과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를 “承繼”로 본다.

第9條(許可의 取消등) 許可官廳은 事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事業 또는 貯藏所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命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事由없이 1年 이내에 그 事業 또는 貯藏所의 사용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 이상 계속하여 그 事業 또는 貯藏所의 사용을 休止한 때
3. 故意 또는 過失로 公衆 또는 使用者에게 현저히 危害를 미치게 한 때
4. 第6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代表者가 그 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月 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10 條 (供給者の義務等) ① 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가 高壓가스를 需要者에게 供給할 때에는 그 需要者の 施設에 대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하며,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需要者에게 危害豫防에 필요한 事項을 啓導하여야 한다.

② 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한 結果 需要者の 施設중 改善되어야 할 事項이 있다고 判단된 경우에는 그 需要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을 改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高壓가스의 需要者가 그 施設을 改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需要者에 대한 高壓가스의 供給을 中止하고 지체없이 그 事實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高壓가스의 需要者에게 그 施設의 改善를 命하여야 한다.

⑤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에 필요한 點檢者의 資格·人員, 點檢裝備, 點檢基準등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 11 條 (安全管理規程) ① 事業者등과 第 20 條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 중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者는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 또는 容器등의 製造 施設 및 使用施設의 安全維持에 관한 安全管理 規程을 정하여 事業開始申告 또는 使用申告를 할 때에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安全管理規程이 安全確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變更를 命할 수 있다.

③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는 容器등의 製造工程·自體檢査方法등을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제출

한 者 및 그 從事者는 安全管理規程을 遵守하고, 그 實施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⑤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 要領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 12 條 (自體檢査) ①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는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에 대하여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的으로 自體檢査를 實施하고, 그 檢査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②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는 그 가 製造한 각각의 容器등에 대하여 自體檢査를 實施한 후 自體檢査表示를 하고, 그 檢査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③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하지 아니한 容器등은 이를 讓渡·賃貸 또는 사용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檢査施設·檢査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 13 條 (施設·容器의 安全維持) ① 事業者등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 및 容器 등의 製造施設을 第 4 條 第 3 項 또는 第 5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② 高壓가스製造者가 高壓가스를 容器에 充填하고자 할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容器의 安全을 點檢한 후 點檢基準에 적합한 容器에 充填하여야 한다.

③ 高壓가스製造者가 容器에 高壓가스를 充填하거나, 高壓가스販賣者가 容器에 充填된 高壓가스를 販賣할 때에는 高壓가스充填臺帳 또는 高壓가스販賣臺帳을 作成하여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④ 高壓가스製造者 또는 高壓가스販賣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容器를 安全하게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第 14 條 (危害防止措置등) ① 高壓가스의 製造者·

貯藏者・販賣者 또는 使用者는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사용의 施設이나 容器등으로 인하여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危害防止를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者는 市長・郡守・區廳長・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에게 그 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使用者의 경우에는 供給者에게 그 事實을 지체없이 通報하여야 한다.

第15條(安全管理者) ①事業者등과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는 그 施設 및 容器등의 安全確保와 危害防止에 관한 職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開始 전 또는 特定高壓가스의 使用前에 安全管理者를 採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採用 또는 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에 申告하고, 解任 또는 退職한 날로부터 15日 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採用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내에 採用할 수 없을 때에는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의 承認을 얻어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採用한 者는 安全管理者가 旅行・疾病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代理者를 選任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④安全管理者는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事業者와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 및 従事者는 安全管理者의 安全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勸告에 따라야 한다.

⑤安全管理者의 資格・人員・職務範圍 및 安全管理者의 代理者의 代行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完成檢査 및 定期檢査) ①事業者등이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이나 容

器등의 製造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を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을 사용하기 전에 許可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販賣者중 容器에 의한 高壓가스販賣者를 제외한다)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的으로 許可官廳의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定期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생략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및 定期檢査의 檢査基準・檢査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7條(容器등의 檢査) ①容器등을 製造・修理 또는 輸入한 者는 당해 容器등을 販賣 또는 사용하기 전에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容器등에 대하여는 그 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생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은 후 容器 또는 特定設備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容器 또는 特定設備에 대하여 市・道知事의 再檢査를 받아야 한다.

1.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의 경과
2. 損傷의 발생
3. 合格表示의 훼손
4. 充填할 高壓가스종류의 變更

③市・道知事は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再檢査에 不合格된 容器 및 特定設備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特定設備에 있어서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修理하여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④市・道知事は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容器등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事項을 刻印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⑤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再檢査를 받아야 할 容器등으로서 檢査 또는 再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讓渡・賃貸 또는 사용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⑥市・道知事は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容器 등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再檢査에 合格한 때에는 合格證明書を 交付하여야 한다.

⑦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再檢査의 檢査施設・檢査基準 및 檢査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8條(容器的 品質保障등) ①動力資源部長官은 容器的 安全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工業振興廳長과의 協議를 거쳐 容器的 종류를 指定하여 당해 容器的 製造者로 하여금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표시하여 이를 販賣하게 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は 容器的 安全管理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流通중인 容器를 收集하여 檢査를 實施하고, 檢査結果 不良品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容器的 製造者 또는 輸入者에게 回收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容器的 收集方法 및 不良品の 回收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9條(容器的 耐用年限) 容器的 耐用年限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20條(使用申告등) ①水素・酸素・液化암모니아・아세틸렌 또는 液化鹽素(이하 “特定高壓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로서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者(이하 “特定高壓가스使用者”라 한다)는 特定高壓ガスを 사용하기 전에 미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7日以內에 그 申告事項을 管割 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高壓가스使用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그 特定高壓ガ스의 使用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이하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라 한다)가 特定高壓ガ스의 使用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を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의 사용전에 申告를 받은 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하며, 定期적으로 申告를 받은 官廳의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및 定期檢査의 檢査基準・檢査方法 및 檢査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⑥市長・郡守・區廳長・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特定高壓가스使用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特定高壓ガ스의 사용을 一時 금지하거나, 特定高壓ガ스의 使用 施設을 封印 또는 臨時領置할 수 있다.

第21條(輸入申告) 高壓가스 또는 容器등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石油事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契約承認을 받은 液化天然가스 또는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契約承認(輸入契約申告를 포함한다)을 받은 液化石油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2條(運搬등) ①高壓ガ스를 讓渡・讓受・運搬 또는 携帶할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야 한다.

②許可官廳 또는 警察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違反된 高壓ガ스의 讓渡・讓受・運搬・携帶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高壓ガ스를 臨時領置할 수 있다.

第23條(安全教育) ①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 使用申告者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

關은 그가 採用하고 있는 安全教育對象者로 하여금 市·道知事가 實施하는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教育對象者의 범위·教育期間 및 教育課程 기타 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24條(許可官廳등의 措置) ①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者 또는 高壓가스使用者에게 危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②許可官廳은 高壓가스의 製造·貯藏·販賣의 施設이나 容器등(이하 이 項에서 “施設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施設등의 移轉·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命하거나 그 施設등의 안에 있는 高壓가스의 폐기를 命할 수 있으며, 그 施設등을 封印할 수 있다.

第25條(保險加入) ①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는 高壓가스의 事故로 인한 他人의 生命·身體나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種類·加入對象·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動力資源部長官은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每3年마다 그 3年째 事業年度 終了후 3月이내에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險保의 收益金의 一部를 高壓가스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게 支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報告·檢査등) ①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등과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者에게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業所·工場·事業場이나 倉庫에서 製造·貯藏·販賣

의 施設, 容器등과 帳簿, 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7條(高壓가스등의 收去) ①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高壓가스의 分析試驗 및 容器등의 檢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最少量의 高壓가스·容器등을 高壓가스의 製造者·貯藏者·販賣者, 容器등의 製造者 또는 使用者로부터 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②第26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하는 公務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28條(韓國가스安全公社의 設立) ①高壓가스로 인한 危害를 豫防하기 위한 가스安全技術의 調査·研究 및 弘報와 行政官廳이 委託하는 다음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韓國가스安全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한다.

1. 가스安全에 관한 各種 檢査 및 教育의 實施
2. 自體檢査 및 다른 檢査機關의 檢査에 대한 指導·確認
3. 各種 施設基準·技術基準 및 檢査基準등의 施行을 위한 細部基準의 制定
4. 기타 가스安全管理에 관한 確認業務

②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③公社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가스安全技術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公社에 가스安全技術審議委員會를 둔다.

⑤가스安全技術審議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29條(公社의 運營등) ①公社는 檢査手數料와 기타 收入으로 運營한다.

②政府는 各種 檢査施設·機器의 購入 및 檢査試驗을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公社에 補助할 수 있다.

第 30 條(任 員) ①公社에는 任員으로 理事長 1人, 理事 3人 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②理事長 및 監事는 動力資源部長官이 任免하고, 理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이 任免한다.

③理事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社務를 統轄한다.

④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 31 條(監 督) 動力資源部長官은 公社를 監督한다.

第 32 條(定款의 記載事項등) 公社의 定款 記載事項·事業 기타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3 條(民法의 準用)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34 條(手數料등) 이 法에 의하여 許可·檢査 또는 教育을 받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手數料 또는 教育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35 條(檢査機關의 指定) 動力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檢査의 一部와 安全管理業務를 專門的·效率的으로 實施·遂行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機關을 指定할 수 있다.

第 36 條(權限의 委託)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 또는 第 35 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 37 條(다른 法과의 關係) ①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과 都市가스事業法에서 規定한 事項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石油事業法 第 12 條의 規定은 高壓가스製造者 및 高壓가스販賣者가 高壓가스를 販賣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38 條(罰 則) ①高壓가스施設을 損壞한 者 및 容器·特定設備를 改造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 1 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 39 條(罰 則) 第 4 條第 1 項前段 및 第 2 項前段 또는 第 5 條第 1 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高壓가스製造業·高壓가스販賣業 또는 容器등의 製造業을 營爲하거나 貯藏所를 設置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 40 條(罰 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4 條第 1 項後段 및 第 2 項後段 또는 第 5 條第 1 項後段의 規定에 違反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한 者

2. 第 10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하지 아니한 者 또는 第 13 條 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 16 條第 1 項 또는 第 17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4. 第 17 條第 5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 41 條(罰 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12 條第 1 項 또는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 15 條第 1 項 또는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採用하지 아니한 者

第 42 條(罰 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5 條第 3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 7 條·第 8 條第 2 項·第 14 條第 2 項·第 20 條第 1 項 또는 第 21 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 12 條第 3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 13 條第 2 項·第 14 條第 1 項·第 22 條第 1 項 또는 第 23 條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 16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

지 아니한者

6. 第 18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者

7. 第 26 條第 1 項 또는 第 27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收去를 拒否 또는 방해한者

第 43 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는 10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 11 條第 1 項・第 3 項, 第 15 條 第 3 項 또는 第 25 條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한者

2. 第 11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는 5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 11 條第 4 項 또는 第 12 條第 1 項・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實施記錄 또는 自體檢査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作成한者

2. 第 10 條第 3 項・第 13 條第 4 項 또는 第 20 條第 3 項・第 4 項의 規定에 違反한者

3. 第 13 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의 充填臺帳 또는 販賣臺帳을 記錄・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記錄한者

4. 第 24 條 또는 第 26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者

③ 第 10 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者는 1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 第 1 項 내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官轄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이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⑤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不服이 있는者는 30 日 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 第 4 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者가 第 5 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

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⑦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關稅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 44 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 39 條 내지 第 42 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 45 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 36 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社 또는 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第 129 條 내지 第 132 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 46 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84 年 7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機器製造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冷凍設備에 사용하는 機器의 製造業許可를 받은者는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冷凍機의 製造許可 또는 特定設備의 製造許可(許可範圍에 特定設備의 製造가 포함된者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 3 條(特定設備製造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전에 特定設備를 製造하고 있는者(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冷凍設備에 사용하는 機器의 製造許可를 받은者를 제외한다)는 이 法 施行 후 6 月 이내에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4條(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하여야 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自體檢査表示에 관한 經過措置)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表示를 하여야 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 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6條(定期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安檢査를 받은 者는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7條(아세틸렌 使用者에 관한 經過措置)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申告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 使用者는 이 法 施行후 3月 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8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

第1條(目的) 이 法은 液化石油가스의 充填·貯藏·販賣·사용 및 가스用品의 安全管理에 관한 事項을 정하고 液化石油가스事業을 合理的으로 調整함으로써 液化石油가스를 적정히 供給·사용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液化石油가스”라 함은 프로판·부탄을 主成分으로 한 가스를 液化한 것(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液化石油가스充填事業”이라 함은 貯藏施設에 貯藏된 液化石油가스를 容器에 充填(配管을 통하여 다른 貯藏탱크에 移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供給하는 事業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充填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

石油가스充填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3.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이라 함은 液化石油가스를 一般의 需要에 따라 配管을 통하여 燃料로 供給하는 事業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4.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이라 함은 容器에 充填된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하는 것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5. “가스用器製造事業”이라 함은 液化石油가스 또는 都市가스事業法에 의한 燃料용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機器를 製造하는 事業을 말하고, “가스用品製造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가스用品製造事業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6. “液化石油가스貯藏所”라 함은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一定量 이상의 液化石油가스를 容器 또는 貯藏탱크에 의하여 貯藏하는 一定한 場所를 말하고, “液化石油가스貯藏者”라 함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 貯藏所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第3條(事業의 許可등) ① 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 또는 가스用品 製造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서울 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서울 特別市와 直轄市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許可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動力資源部令

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 및 가스用器製造에 관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⑤液化石油가스 充塡事業者는 容器에 의한 液化石油가스를 供給하기 위하여 營業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營業所를 두고자 하는 液化石油가스 充塡事業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등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 充塡事業者가 營業所를 두고자 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하며, 營業所에 設置하는 容器貯藏所의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⑦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이 第1項 내지 第3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거나 申告를 받은 때에는 7日이내에 그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管轄 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4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產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違反하여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

第5條(貯藏所의 設置許可) ①液化石油가스貯藏

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제외한다)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이 정하고, 液化石油가스 貯藏所의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③第3條第7項의 規定은 第1項의 許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條(事業開始등의 申告) 第3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등”이라 한다)가 그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 貯藏所의 사용을 開始하거나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 貯藏所의 사용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休止한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 貯藏所의 사용을 再開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7條(承繼) ①事業者등이 그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 貯藏所를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와 法人인 事業者등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 貯藏所의 讓受者·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과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그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承繼한 事實을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地位의 承繼者(液化石油가스 貯藏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를 “承繼”로 본다.

第8條(許可의 取消등) 許可官廳은 事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事

業 또는 液化石油가스 貯藏所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命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正當한 事由없이 1年 이내에 그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 貯藏所의 사용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 이상 계속하여 그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 貯藏所의 사용을 休止한 때
3. 故意 또는 過失로 公衆 또는 使用者에게 현저히 危害를 미치게 한 때
4.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代表者가 그 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月 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供給者의 義務) ① 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者·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가 液化石油가스를 需要者에게 供給할 때에는 그 需要者의 施設에 대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하고,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需要者에게 危害豫防에 필요한 事項을 啓導하여야 한다.

② 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者·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한 결과 需要者의 施設중 改善되어야 할 事項이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需要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을 改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者·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는 液化石油가스의 需要者가 그 施設을 改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需要者에 대한 液化石油가스의 供給을 中止하고, 지체없이 그 事實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液化石油가스의 需要者에게 그 施設의 改善를 命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에 필요한 點檢者의 資格·人員, 點檢裝備, 點檢基準등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0條(安全管理規程) ① 事業者등과 第29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者중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者는 그 施設 및 容器·가스用品등의 安全維持에 관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事業開始申告 또는 使用申告를 할때에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安全管理規程이 安全確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③ 가스用品 製造事業者는 가스用品의 製造工程·自體檢査方法등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한 者 및 그 從事者는 安全管理規程을 遵守하고, 그 實施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要領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自體檢査) ① 事業者등은 液化石油가스의 充填·集團供給·販賣·貯藏의 施設에 대하여 定期的으로 自體檢査를 實施하고 그 檢査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② 가스用品 製造事業者는 그가 製造한 각각의 가스用品에 대하여 自體檢査를 實施한 후 自體檢査表示를 하여야 하며, 그 檢査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하지 아니한 가스用品은 이를 讓渡·賃貸 또는 使用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檢査施設·檢査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2條(施設·用器의 安全維持) ① 事業者등은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貯藏·販賣의 施設 또는 가스用品 製造施設을 第3條第4項 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② 液化石油가스 充塡事業者가 液化石油가스를 容器에 充塡하고자 할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容器의 安全을 點檢한 후 點檢基準에 적합한 容器에 充塡하여야 한다.

③ 液化石油가스 充塡事業者가 容器에 液化石油가스를 充塡하거나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가 容器에 充塡된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할 때에는 液化石油가스 充塡臺帳 또는 液化石油가스 販賣臺帳을 作成하여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④ 液化石油가스 充塡事業者는 容器를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고, 安全하게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第13條(危害防止措置등) ①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 使用者는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사용의 施設이나 容器·가스用品으로 인하여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危害防止를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者는 市長·郡守·區廳長·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에 그 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液化石油가스 使用者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供給者에게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第14條(安全管理者) ① 事業者등과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者는 그 施設·容器·가스用品등의 安全確保와 危害防止에 관한 職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開始 또는 液化石油가스의 使用前에 安全管理者를 採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採用 또는 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에 申告하고 解任 또는 退職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採用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내에 採用할 수 없을 때에는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의 承認을 얻어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採用한 者는 安全管理者가 旅行·疾病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代理者를 選任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④ 安全管理者는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事業者와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者 및 從事者는 安全管理者의 安全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勸告에 따라야 한다.

⑤ 安全管理者의 資格·人員·職務範圍 및 安全管理者의 代理者의 代行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施設의 施工·管理) ① 事業者등이나 液化石油가스 使用者가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を 하고자 할 때에는 그 施設을 施工·管理할 수 있는 資格을 가진 者(이하 “施工者”라 한다)로 하여금 그 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施工者의 資格과 工事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施工者는 이 法 및 다른 法令에 적합하게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사용의 施設을 施工·管理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者 1人 이상을 그 工事現場에 配置하여야 한다.

④ 施工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상의 工事に 관한 施工·管理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 16 條 (施工의 自體檢査) ① 第 15 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者가 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を 施工·管理한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體檢査를 實施하고, 그 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② 液化石油가스 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 貯藏者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記錄을 完成檢査時에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17 條 (施工記錄등의 保存) 液化石油가스 充

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液化石油가스 貯藏者 및 第 15 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者는 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を 完工한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施工記錄 및 配管圖面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第 18 條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 ① 液化石油가스

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 貯藏者가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貯藏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を 할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의 工程別로 許可官廳의 中間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 외의 者가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施設의 設置工事を 할 때에는 당해 工事의 施工者가 中間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 事業者등이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貯藏·販賣의 施設 또는 가스用品 製造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を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을 사용하기 전에 許可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 외의 者가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施設의 設置工事を 完工한 때에는 당해 工事의 施工者가 完成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 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의 檢査基準·檢査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 19 條 (供給施設의 臨時合格) ① 許可官廳은 液

化石油가스 集團供給施設에 대한 第 18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期間 및 使用方法을 정하여 당해 施設을 臨時合格으로 할 수 있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合格으로 된 施設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期間에 한하여 그 使用方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第 20 條 (定期檢査) ① 液化石油가스 充塡事業者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 貯藏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的으로 許可官廳의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定期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檢査基準 및 檢査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 21 條 (가스用品의 輸入 및 檢査) ① 가스用品

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가스用品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는 당해 가스用品을 販賣 또는 사용하기 전에 市·道知事の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가스用品에 대하여는 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市·道知事は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가스用品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事項을 刻印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④ 第 2 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할 가스用品으로써 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讓渡·賃貸 또는 사용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檢査施設·檢査基準 및 檢査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 22 條 (가스用品의 品質保障등) ①動力資源部 長官은 가스用品의 安全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工業振興廳長과의 協議를 거쳐 가스用品의 종류를 指定하여 가스用品 製造事業者로 하여금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用品을 販賣하게 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は 가스用品의 安全管理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流通중인 가스用品을 收集하여 檢査를 實施하고, 檢査結果 不良品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가스用品의 製造事業者 또는 輸入者에게 回收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③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의 收集方法 및 不良品の 回收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④가스用品 製造事業者는 그가 製造한 가스用品에 그 가스用品의 製造者·用途·使用方法·保證期間등을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가스用品을 改造하여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를 變更시켜서는 아니되며, 가스用品 使用者는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에 따라 가스用品을 사용하여야 한다.

第 23 條 (定量販賣) ①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者는 容器에 定量의 液化石油가스를 充填하여 販賣하여야 한다.

②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者가 液化石油가스를 容器에 充填한 때에는 당해 容器에 充填量을 표시하는 證紙를 붙여야 한다.

③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는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證紙를 偽造·變造 또는 훼손하거나 容器에 充填된 液化石油가스를 減量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紙를 붙이는 容器의 종류, 證紙의 規格 및 記載事項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 24 條 (販賣의 제한) ①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

者 및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는 第 23 條의 規定에 의한 證紙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證紙가 훼손된 容器 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不良容器에 充填된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는 液化石油가스의 品質을 低下시켜 販賣하거나, 品質이 低下된 液化石油가스를 供給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가 一般需要者에게 液化石油가스를 供給할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供給方法에 따라야 한다.

④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는 市·道知事が 정하는 地域 또는 建物안의 需要者에 대하여는 容器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를 供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25 條 (가스供給義務)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는 正當한 事由없이 그 許可받은 供給地域안에 있는 液化石油가스 需要者에게 液化石油가스의 供給을 拒絕하거나 許可받은 供給地域外的 地域에 液化石油가스를 供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26 條 (供給規程) ①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의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 供給規程을 정하여 市·道知事の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제외한다)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市·道知事は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이 다음의 基準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承認하여야 한다.

1. 料금이 적정할 것
2. 料금이 定率 또는 定額으로 명확하게 規定되어 있을 것
3.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와 使用者간의 施設의 所有 및 管理責任과 集團供給施

設 및 使用施設에 대한 費用의 負擔額이 적정·명확하게 規定되어 있을 것

4. 特定人에 대하여 부당하게 差別하는 것이 아닐 것

第 27 條 (供給規程의 變更命令) 市·道知事は 第 26 條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이 社會的·經濟的 事情의 變動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公共의 利益增進에 支障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에게 그 供給規程의 變更를 命할 수 있다.

第 28 條 (供給規程의 揭示義務)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는 第 26 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規程의 承認을 얻거나 第 27 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規程을 變更한 때에는 營業所·事業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供給規程을 揭示하여야 한다.

第 29 條 (使用申告등) ① 液化石油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로서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者는 使用前에 미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2)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7 日이내에 그 申告事項을 管轄 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3) 液化石油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 및 가스用品을 갖추어야 한다.

4)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이하 “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者”라 한다)가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を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의 使用前에 申告를 받은 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하며, 定期的으로 申告를 받은 官廳의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5)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및 定期檢査의 檢査基準·檢査方法 및 檢査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6) 市長·郡守·區廳長·警察署長 또는 消防署

長은 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을 封印 또는 臨時領置할 수 있다.

第 30 條 (液化石油가스의 輸入契約등의 承認) 液化石油가스의 輸入契約를 締結하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그 契約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 이하의 契約를 締結하고자 하는 者와 그 契約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 31 條 (安全教育) ① 事業者등과 施工者 및 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者는 그가 採用하고 있는 安全教育對象者로 하여금 市·道知事が 實施하는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教育對象者의 범위·教育期間 및 教育課程 기타 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 32 條 (許可官廳등의 措置) ①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 또는 液化石油가스 使用者에게 危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②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 또는 液化石油가스 使用者의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施設이나 容品·가스用品(이하 이 項에서 “施設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危害의 발생이 緊迫하여 緊急·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施設등의 移轉·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命하거나 그 施設등의 안에 있는 液化石油가스의 廢棄를 命할 수 있으며, 그 施設등을 封印할 수 있다.

第 33 條 (保險加入) ① 事業者등 과 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者는 事故로 인한 他人의 生命·身體 나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종류· 加入對象· 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動力資源部長官은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每 3 年마다 그 3 年째 事業年度 終了후 3 月 이 내에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收益金의 一部를 液化石油가스 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게 支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關於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34 條 (調整命令) 動力資源部長官 또는 市·道 知事는 液化石油가스의 需給 및 安全確保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 充塡事業者·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에게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第 35 條 (보고·檢査등) ①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者 및 施工者에게 그 業務에 關於한 報告 또는 書類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該 事業所· 工場· 事業場이나 倉庫에서 液化石油가스의 充塡· 集團供給· 貯藏· 販賣의 施設, 가스用品 製造施設, 容器, 가스用品, 帳簿, 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該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 36 條 (試驗用品의 收去) ①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液化石油가스의 分析試驗 및 가스用品의 檢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最少量의 液化石油가스 또는 가스用品을 事業者

등이나 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者로부터 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 35 條 第 2 項의 規定은 第 1 項의 規定에 하여 收去하는 公務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 37 條 (手數料등) 이 法에 의하여 許可· 檢査 또는 教育을 받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手數料 또는 教育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38 條 (基金의 設置) ① 가스의 安全管理과 流通構造의 改善을 위하여 가스安全管理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②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國內에서 精製된 液化石油가스의 販賣(輸出에 의한 販賣를 제외한다)時에 石油精製業者로 부터 徵收하는 收入金
2. 液化石油가스의 輸入時에 輸入業者로부터 徵收하는 收入金
3. 石油精製業者외의 者가 製造한 液化石油가스의 販賣時에 當해 製造業者로부터 徵收하는 收入金

③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의 徵收對象者· 徵收比率 및 徵收方法에 關於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動力資源部長官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의 徵收對象者가 收入金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納付期限內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納付하지 아니한 收入金에 納付期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納付日까지의 期間에 對하여 金融機關의 一般貸出 延滯利率을 適用한 加算金을 徵收한다.

第 39 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의 事業에 하여 이를 사용한다.

1. 가스安全技術의 開發· 調査· 研究 및 가스安全管理에 關한 檢査· 教育· 弘報事業의 補助
2. 가스流通構造의 改善을 위한 融資
3.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가스安全管理事業에 의 補助 또는 融資

第 40 條 (基金의 管理 및 運用) ①基金은 動力 資源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이하 “基金管理者”라 한다)가 이를 管理한다.

②動力資源部長官은 基金의 管理·運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基金管理者에 대하여 필요한 監督·命令을 할 수 있다.

③基金의 管理·運用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41 條 (權限의 委託) 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高壓가스 安全管理法에 의한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 42 條 (都市가스事業法의 準用) 都市가스 事業法 第6章(第31條 내지 第39條)의 規定은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 43 條 (罰則) ①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施設을 損壞하거나 그 施設의 機能에 障碍를 가져오게 하여 液化石油가스의 供給을 방해한 者 또는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가스用品의 用途를 變更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 44 條 (罰則)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液化石油가스 充填事業·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 또는 가스用品 製造事業을 營爲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 45 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第2項 또는 第5條第1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液化石油 가스 販賣事業을 營爲하거나 液化石油가스 貯藏所를 設置한 者 또는 第3條第3項 또는 第5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違反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한 者

2. 第9條第1項 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18條第2項 또는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또는 第21條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15條第3項·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第2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30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液化石油가스의 輸入契約을 締結하거나 그 契約內容을 變更한 者

6.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第 46 條 (罰則) 第11條第1項·第2項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하거나 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採用하지 아니한 者는 2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 47 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第6項·第6條·第7條第2項·第13條第2項·第21條第1項·第29條 第1項 또는 第30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9條第2項·第11條第3項·第12條 第2項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18條第1項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4.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26條第1項·第27條 또는 第31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6. 第35條第1項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收去를 拒否하거나 방해한 者

第 48 條 (過怠料) ①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

第 12 條第 4 項・第 14 條第 3 項・第 15 條第 4 項・第 25 條 또는 第 33 條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 9 條第 3 項・第 10 條第 4 項・第 15 條第 1 項・第 19 條第 2 項・第 24 條第 3 項, 第 4 項・第 29 條第 3 項(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者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第 4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 11 條第 1 項・第 2 項 또는 第 16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記錄한 者

3. 第 12 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의 充塡臺帳 또는 販賣臺帳을 記錄・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記錄한 者

4. 第 17 條의 規定에 의한 施工記錄등을 記錄・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記錄한 者

5. 第 28 條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을 揭示하지 아니한 者

6. 第 32 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7. 第 35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命令에 違反한 者

③第 9 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1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第 1 項 내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⑤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 日 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 4 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 5 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⑦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 49 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 44 條 내지 第 47 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 50 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 41 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第 129 條 내지 第 132 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 51 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84 年 7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기타 가스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기타 가스事業許可를 받은 者중 가스充塡業者는 第 3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充塡事業許可를, 가스販賣業者는 同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 3 條(簡易가스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簡易가스事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 3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集團供給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 4 條(高壓가스貯藏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 安全管理法에 의하여 高壓가스 貯藏許可를 받은 者는 第 5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貯藏所設置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 5 條(器具製造業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 安全管理法에 의하여 器具製造業許可 또는 종전의 가스事業法の 規定에 의하여 가스用品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 3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 製造 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 6 條(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第 10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제출 할 者는 이 법 施行후 3 月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 7 條(自體檢査表示에 관한 經過措置) 第 11 條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表示를 하여야 할 者는 이 법 施行후 3 月 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 8 條(定期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 安全管理法 또는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받은 保安檢査 및 定期檢査는 第 20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 9 條(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 安全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特定高壓가스 使用申告중 液化石油가스 使用申告는 第 29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使用申告로 본다.

第 10 條(基金의 財源造成期限) 第 38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財源造成은 1991 年 12 月 31 日까지로 한다.*

都市가스事業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법은 都市가스事業을 合理的으로 調整·육성하여 使用者의 利益을 보호하고 都市가스事業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함으로써 公共의 利益과 安全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都市가스事業”이라 함은 需要者에게 燃料用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供給하는 事業(石油事業法에 의한 石油精製業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都賣事業 및 一般都市가스事業을 말한다.

2. “都市가스事業者”라 함은 第 3 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의 許可를 받은 가스都賣事業者 및 一般都市가스事業者를 말한다.

3. “가스都賣事業”이라 함은 一般都市가스事業者의 者가 一般都市가스事業者 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大量需要者에게 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供給하는 事業을 말한다.

4. “一般都市가스事業”이라 함은 가스를 製造하거나 가스都賣事業者로부터 天然가스를 供給받아 一般의 需要에 따라 配管으로 需要者에게 供給하는 事業을 말한다.

5. “가스供給施設”이라 함은 가스의 製造·供給을 위한 施設로서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스使用施設”이라 함은 가스供給施設의 가스使用者의 施設로서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 2 章 都市가스事業

第 3 條(事業의 許可) ① 都市가스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事項을 제외한다)을 變更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는 다음 各號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都市가스事業의 開始가 一般의 需要에 적합할 것.

2. 都市가스事業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源 및 技術의 能力이 있을 것.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외에 필요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市·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 때에는 7日 이내에 그 許可事項을 管轄 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4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都市가스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違反하여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

第5條(事業의 開始義務등) ① 都市가스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가스供給施設을 設置하고 事業을 開始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は 가스의 需給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一般都市가스事業者에게 供給區域·地點·主要工程別로 가스供給施設의 設置期間을 정하여 가스供給施設을 設置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③ 都市가스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을 開始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을 設置할 때에는 지체없이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6條(事業의 讓渡·讓受등) ① 都市가스事業者가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讓渡·讓受하거나 그 事業을 合併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の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3條第2項 및 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認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條(事業의 承繼등) ① 都市가스事業者가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와 法人인 都市가스事業者의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讓受者·相續人(第4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 또는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과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都市가스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인은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8條(事業의 休止·廢止등) ① 都市가스事業者가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休止하거나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の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都市가스事業者인 法人의 解散決議 또는 解散에 대한 總社員의 同意는 市·道知事の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效力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市·道知事は 都市가스事業의 休止·廢止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인 法人의 解散으로 인하여 公共의 利益이 沮害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許可 또는 第2項의 認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9條(許可의 取消등) 市·道知事は 都市가스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事業의 停止 또는 제한을 命하거나, 500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第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都市가스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가스供給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때
3. 都市가스事業의 推進이 현저히 不振하거나 事業의 開始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4. 故意 또는 過失로 公衆 또는 使用者에게 현저한 危害를 미치게 한 때
5.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代表者가 그 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 3月 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10 條(課徵金處分) ①第 9 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程度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第 9 條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市·道知事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徵收法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第 3 章 가스供給施設 및 使用施設

第 11 條(施設工事計劃의 承認) 都市가스事業者가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경미한 工事を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工事計劃을 정하여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경미한 事項을 제외한다)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 12 條(가스施設의 施工·管理) ①都市가스事業者 또는 가스使用者가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의 施設工事 또는 變更工사를 할 때에는 그 工사를 施工·管理할 수 있는 資格을 가진 者(이하 “施工者”라 한다)로 하여금 그 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者의 資格과 工事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施工者는 이 法 및 다른 法令에 적합하게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을 施工·管理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定하는 資格者를 1 人 이상 그 工事現場에 配置하여야 한다.

④施工者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規模이상의 工事의 施工·管理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⑤가스供給施設과 가스使用施設의 施設別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定한다.

第 13 條(施工의 自體檢査) 第 12 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者가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

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사를 施工·管理한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自體檢査를 實施하고, 그 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第 14 條(施工記錄등의 保存) 都市가스事業者와 第 12 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者는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사를 完工한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施工記錄 및 配管圖面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第 15 條(中間檢査 및 完成檢査) ①都市가스事業者는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사를 할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의 工程別로 市·道知事의 中間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都市가스事業者가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사를 完工하거나, 가스使用者가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가스使用施設(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이라 한다)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사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의 사용전에 市·道知事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 또는 完成檢査의 檢査基準 및 檢査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定한다.

第 16 條(供給施設의 臨時合格) ①市·道知事는 第 15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에 대한 完成檢査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期間 및 使用方法을 정하여 가스供給施設을 臨時合格으로 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合格으로 된 가스供給施設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期間내에 한하여 그 使用方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第 17 條(定期檢査) ①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는 그 가스供給施設 또는 特定가스使用施設에 대하여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的으로 市·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 대하여는 定期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생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檢査基準 및 檢査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 令으로 定한다.

第4章 가스供給

第18條(가스의 供給計劃) ①都市가스事業者는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0 月末日까지 다음 年度이후 3 年間の 가스供給 計劃을 作成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都市가스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計劃을 變更한 때에는 지체없이 市·道 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は 第1項의 가스供給計劃이 社 會的·經濟的 事情의 變動으로 적정하지 못하 게 되어 公共의 利益增進에 支障을 가져올 염 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市가스事業者에 게 그 가스供給計劃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19條(供給義務) 一般都市가스事業者는 正當 한 事由없이 그 許可받은 供給地域안에 있는 가스需要者에게 가스의 供給을 拒絶하여서는 아니되며, 許可받은 供給地域의 地域에 가 스를 供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0條(가스의 供給規程) ①一般都市가스事業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 供給規程을 定하 여 市·道知事の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 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 程이 다음의 基準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 를 承認하여야 한다.

1. 料금이 적정할 것.
2. 料금이 定率 또는 定額으로 명확하게 規定 되어 있을 것.
3. 一般都市가스事業者와 가스使用者간의 責 任과 가스供給施設 및 가스使用施設에 대한 費用의 負擔額이 적정·명확하게 規定되어 있을 것.

4. 特定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差別하는 것이 아닐 것.

③第18條第3項의 規定은 供給規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가스供給計劃”을 “供 給規程”으로 본다.

第21條(供給規程등의 遵守義務) 一般都市가스 事業者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計 劃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에 따 라 가스를 供給하여야 한다.

第22條(供給規程의 揭示義務) 一般都市가스事 業者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 規程의 承認을 얻거나 供給規程을 變更한 때에는 지 체없이 營業所·事務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供給規程을 揭示하여야 한다.

第23條(特定供給契約) ①一般都市가스事業者간 에 가스의 供給에 관한 契約을 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市·道知事の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이 다음의 基準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承認하여야 한다.

1. 가스를 供給하는 一般都市가스事業者의 都 市가스事業遂行에 支障을 가져올 염려가 없 을 것.

2. 가스의 供給을 받을 一般都市가스事業者 의 가스의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 적합할 것.

第24條(供給條件) ①가스都賣事業者가 一般都 市가스事業者에게 供給하는 가스의 料金 기타 供給條件은 動力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②動力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供給條件이 一 般都市가스事業者의 供給條件에 비하여 적정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是正을 命 할 수 있다.

第25條(가스의 成分 및 熱量) 都市가스事業者 는 動力資源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 의 有害成分·熱量·壓力 및 燃燒性を 測定하 고, 그 結果를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第 5 章 安全管理

第 26 條(安全管理規程) ①都市가스事業者는 가스 供給施設 및 가스使用施設의 安全維持에 관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事業開始전에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市·道知事は 安全確保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③都市가스事業者 및 그 從事者는 安全管理規程을 遵守하여야 한다.

④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定의 作成要領 기타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 27 條(가스供給施設의 維持등) ①都市가스事業者는 가스供給施設을 第 12 條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하고, 定期的으로 自體檢查를 實施한 후 그 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は 가스供給施設이 第 12 條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都市가스事業者에게 그 基準에 적합하도록 가스供給施設의 修理·改善·移轉을 命하거나 사용의 禁止 또는 制限을 命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は 公共의 安全維持를 위하여 緊急·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市가스事業者에게 그 가스供給施設의 移轉·사용의 禁止 또한 制限을 命하거나, 가스供給施設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都市가스事業者에게 발생한 損失에 대하여는 天災·地變·戰爭 기타 不可抗力의 事由로 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補償을 할 수 있다.

第 28 條(가스使用施設의 危害豫防措置등) ①一般都市가스事業者는 가스使用者에게 다음의 危害豫防措置를 하여야 한다.

1. 危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의 周知 및 啓導
2. 가스使用施設이 第 12 條第 5 項의 規定에 의

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定期的 安全點檢實施

3. 危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의 勸告 및 應急措置

4. 기타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措置

②一般都市가스事業者는 第 1 項第 2 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한 결과 가스使用施設중 改善되어야 할 事項이 있다고 判繼될 때에는 가스使用者에게 당해 施設의 改善을 勸告하고, 가스使用者가 그 勸告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스使用者에 대한 가스의 供給을 中止한 후 그 事實을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市·道知事は 가스使用者에게 그 가스使用施設의 改善을 命하여야 한다.

④第 1 項第 2 號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에 필요한 點檢者의 資格·人員, 點檢裝備, 點檢基準 등에 관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 29 條(安全管理者) ①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 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는 가스供給施設 또는 特定가스使用施設의 安全維持 및 運用に 관한 職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開始 또는 사용전에 安全管理者를 採用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安全保健法 第 13 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安全管理者는 이 法에 의하여 採用된 安全管理者로 본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採用한 者는 安全管理者를 採用 또는 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지체없이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 解任 또는 退職한 날로부터 15 日 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採用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내에 採用할 수 없을 때에는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採用한 者는 安全管理者가 旅行·疾病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代理者를 選任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④安全管理者는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採用한 者 및 그 從事者는 安全管理者의 安全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勸告에 따라야 한다.
⑤安全管理者의 資格·人員·職務範圍 및 安全管理者의 代理者의 代行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安全教育) ①都市가스事業者·施工者 및 特定가스 使用施設의 使用者는 그가 採用하고 있는 安全教育對象者로 하여금 市·道知事가 實施하는 安全教育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教育對象者의 범위·教育期間 및 教育課程 기타 教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6章 土地의 사용등

第31條(公共用 土地의 사용) ①都市가스事業者는 그 事業用に 쓰이게 하기 위하여 道路·橋梁·下水溝·溝渠·河川·堤防·기타 公共用 土地의 地上 또는 地下에 配管을 設置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公共用 土地의 效用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管理者의 許可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公共用 土地의 管理者는 정당한 事由없이 第1項의 使用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2條(他人의 土地의 一時 사용) ①都市가스事業者는 配管을 設置하거나 修理하기 위하여 他人의 土地를 부득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一時 사용할 수 있다.

②都市가스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一時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기타 非常事態가 발생한 경우에 15日 이내의 一時 사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市·道知事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을 때에는 그 事實을 土地의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都市가스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一時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土地의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그 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事由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使用開始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時 사용하고자 하는 土地가 住居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使用日時 및 期間에 관하여 그 住居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 사용의 期間은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 사용을 위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았음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3條(他人의 土地의 地下使用) ①都市가스事業者는 그 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現在의 使用方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他人의 土地의 地下에 配管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土地의 所有者 및 占有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都市가스事業者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工事を 施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都市가스事業者는 미리 土地의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4條(他人의 土地에의 出入) ①都市가스事業者는 그 事業用 가스供給施設의 設置를 위한 測量 또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있다.

②第32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32條第4項·第5項 및 第7項 本文의 規

定은 都市가스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5條(他人의 土地의 通行) ①都市가스事業者는 그 事業用 가스供給施設의 工事を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를 通行할 수 있다.

(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通行하는 者는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3 第32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都市가스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通行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6條(他人의 植物의 伐採·移植) ①都市가스事業者는 植物이 그 事業用 가스供給施設의 設置 또는 保存에 障礙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는 경우와 植物이 그 事業用 가스供給施設에 관한 測量·實地調査 또는 가스供給施設의 工事に 支障이 되어 부득이 伐採 또는 移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그 植物을 伐採 또는 移植할 수 있다.

(2)都市가스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植物을 伐採 또는 移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植物의 所有者에게 그 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事由로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伐採 또는 移植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第32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7條(損失補償) 都市가스事業者는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一時 사용하거나,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地下를 사용하거나,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通行하거나,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植物을 伐採 또는 移植함으로써 損失을 입힌 때에는 그 損失을 받은 者에게 相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第38條(裁定申請) ①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 都市가스事業者와 損失을 받은 者간에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損失을 받은 者는 市·道知事에게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은 訴訟法에 의한 訴願의 裁決로 보고 이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裁定을 받은 날로부터 1月 이내에 行政訴訟를 提起할 수 있다.

第39條(原狀回復義務) 都市가스事業者는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一時 사용이 終了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土地를 原狀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原狀으로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損失은 補償하여야 한다.

第7章 監 督

第40條(調整命令등) ①動力資源部長官은 가스의 需給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에게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は 都市가스事業者의 事業을 指導·監督하며, 가스의 需給의 원활과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供給地域의 調整, 事業의 統·廢合을 命할 수 있다.

第41條(보고) ①動力資源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は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에게 그 事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第42條(檢査) ①市·道知事は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都市가스事業者 및 施工者의 事務所 기타 營業場에 出入하여 帳簿·書類·施設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8章 補 則

第43條(保險加入) ① 都市가스事業者는 그가 供給하는 가스의 事故로 인한 他人의 生命·身體나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종류·加入對象·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動力資源部長官은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每3年마다 그 3年째 事業年度 終了후 3月 이내에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收益金의 一部를 都市가스 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게 支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手數料등) 이 法에 의하여 許可·認可·承認·檢査 및 教育을 받거나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手數料 또는 教育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45條(權限의 委託)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高壓가스 安全管理法에 의한 韓國가스 安全公社 또는 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46條(다른 法과의 관계) ① 가스供給施設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하여는 高壓가스 安全管理法과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을 適用한다.

② 石油事業法第12條의 規定은 都市가스事業者가 가스를 販賣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7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章 罰 則

第48條(罰則) ① 가스供給施設을 損壞하거나 가스供給施設의 機能에 障碍를 입혀 가스의 供給을 방해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② 都市가스事業者의 承認없이 가스供給施設을 操作하여 가스의 供給을 방해한 者는 1年 이

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都市가스事業에 중사하는 者가 정당한 事由 없이 가스供給의 障碍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第2項의 刑과 같다.

④ 都市가스事業者의 承諾없이 가스供給施設을 變更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49條(罰則) 第3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都市가스事業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都市가스事業을 營爲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5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違反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한 者

2. 第11條 또는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 또는 完成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第5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15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 또는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3. 第20條第1項·第23條第1項 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한 者

4. 第25條·第27條第1項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27條第2項·第3項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第52條(罰則)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하거나 第2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00萬원 이하

의 罰金에 處한다.

第 53 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20 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의 變更命令에 違反하거나 第 30 條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教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2. 第 42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
• 방해 또는 忌避한 者

第 54 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 5 條第 1 項·第 3 項, 第 12 條第 1 項·第 4 項, 第 18 條第 1 項·第 2 項, 第 19 條·第 21 條·第 26 條第 1 項·第 3 項, 第 29 條 第 3 項 또는 第 43 條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 5 條第 2 項·第 18 條第 3 項 또는 第 26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 13 條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作成한 者
2. 第 7 條第 2 項·第 14 條·第 16 條第 2 項·第 22 條 또는 第 28 條第 2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 41 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都市가스事業者

③ 第 28 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10 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 第 1 項 내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⑤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 日 이내에 管轄 市·道知事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 第 4 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 市·道知事の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 5 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 市·道知事は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

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⑦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 55 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 48 條 내지 第 53 條의 違反行爲를 할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 56 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市·道知事가 第 45 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第 129 條 내지 第 132 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 57 條(罰則適用의 特例) 第 50 條 내지 第 53 條의 罰則에 관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 9 條 및 第 10 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는 行爲에 대하여는 市·道知事の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4 年 7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②(一般都市가스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가스事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 3 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都市가스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供給規程 및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規程 및 保安規程의 承認을 얻은 者는 第 20 條 및 第 26 條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 및 安全管理規程의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